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1076호 2016. 1. 12(화)

## ◀ 조 례 ▶

-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2호) ..... 2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3호) ..... 4

## ◀ 훈 령 ▶

- 포항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제313호) ..... 7

## ◀ 고 시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제2016 - 1호) ..... 8

## ◀ 공 고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제2016 - 22호) ..... 12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제2016 - 22호) ..... 15
- 주민의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제2016 - 22호) ..... 16
-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제1호) ..... 17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1월 12일

포항시 조례 제1382호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생략)</p> <p>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신설〉</p> <p>④ ~ ⑤ (생략)</p>	<p>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일상의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5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1월 12일

포항시 조례 제1383호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도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벽보·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 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u>불법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및 비용에 상당하는 물품 지급</u></p> <p>4. (생 략)</p> <p>〈<u>신 설</u>〉</p>	<p>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27조(<u>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u>) ① <u>도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벽보·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의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 1. 개정이유

- 날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계 상위법령 및 조항과 맞지 않는 호 삭제(제11조)
- 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제27조)
  -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실비 보상금을 지급

**훈 령**

포항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1월 12일

포항시 훈령 제313호

**포항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

포항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조례가 신설되어(2015.07.21. 조례 1305호) 시행되고 있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

고 시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고시 제2016 - 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12

포 항 시 장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 소로3류3호선)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3-3 개설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장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 소3-3 개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01-2 일원	도로개설 (L=103m, B=6m)	2016. 1. 12 ~ 2019. 12. 31	포항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소로3류3호선(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4,504	722					
1	오천 구청	359-1	전	202	202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청리 36-3	박*조 외 3인			
2	오천 구청	407	도로	73	73		국(재무부)			
3	오천 구청	353	하천	2,654	45		국(재무부)			
4	오천 구청	402-1	전	2	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09-16	김*희			
5	오천 구청	561-3	전	10	10		국(재무부)			
6	오천 구청	568	전	142	142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8-5	김*철	해도동 한성맨션 201호 입상근 죽도동 센트럴파크 1-102 한*수	근저당	
7	오천 용덕	401-2	하천	120	120		국(재무부)			
8	오천 용덕	419-1 2	도로	1,204	31		국(재무부)			
9	오천 용덕	400-6	전	97	97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청리 131	임*명			

②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명	권리종류및내용	
1	오천 구정	359	가옥	슬래브	m <sup>2</sup>	41.00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18번길 37	박*조 외 3인			
			가옥	함석+스레트	m <sup>2</sup>	78.00					
			창고및보일러실	슬래브	m <sup>2</sup>	9.00					
			창고및보일러실	스레트	m <sup>2</sup>	3.36					
			마당	무근콘크리트	m <sup>2</sup>	12.50					
			담장	콘크리트블록	m <sup>2</sup>	3.06					
			문주	무근콘크리트	EA	2.00					
			대문지붕	철근콘크리트	EA	1.00					
			대문	철재	EA	1.00					
			정화조	FRP	EA	1.00					
수도	철재	EA	1.00								
2	오천 구정	359	가옥	스레트	m <sup>2</sup>	74.00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18번길 37	박*조 외 3인			
			세면장	슬래브	m <sup>2</sup>	5.44					
			가옥	스레트	m <sup>2</sup>	12.00					
			까추	판넬	m <sup>2</sup>	2.00					
			마당	무근콘크리트	m <sup>2</sup>	9.50					
			담장	콘크리트블록	m <sup>2</sup>	4.68					
			문주	무근콘크리트	EA	2.00					
			대문	철재	EA	1.00					
3	오천 구정	340	창고	함석+스레트	m <sup>2</sup>	1.60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23	이*송			
			화장실	함석+스레트	m <sup>2</sup>	3.00					
			창고및보일러실	함석+스레트	m <sup>2</sup>	6.00					
			까추	함석+스레트	m <sup>2</sup>	5.30					
			가옥	함석+스레트	m <sup>2</sup>	99.00					
			마당	무근콘크리트	m <sup>2</sup>	72.00					
			담장	콘크리트블록	m <sup>2</sup>	43.18					
			문주	무근콘크리트	EA	2.00					
			대문	철재	EA	1.00					
			정화조	FRP	EA	1.00					
			수도	철재	EA	2.00					
			수도계량기	철재및FRP	EA	1.00					
			과실수	나무	주	4.00					
조경수	나무	주	12.00								
4	오천 구정	563	담장	합성목재	m <sup>2</sup>	4.50	남구 동해면 신정리 281 신정그린맨션 1304	조*택	남구 오천읍 구정리 33-7 경북오 천신용 협동조 합	근저당	
			담장	벽돌+합성목재	m <sup>2</sup>	21.93					
			문주	무근콘크리트	EA	2.00					
			대문	철재	EA	1.00					
			마당	합성목재	m <sup>2</sup>	3.00					
			과실수	나무	주	4.00					
			조경수	나무	주	4.00					
5	오천 용덕	401	울타리	합성목재	M	12.00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18번길 37-25	이*희			
6	오천 용덕	401	울타리	철재	M	21.00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79번길 5	함*길 (박*자)			
			조경수	나무	주	4.00					
			과실수	나무	주	1.00					

※ 관계 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 및 남·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 054-270-3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6-22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3항에 의거 2016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 포항시장 및 포항시의회의원 - 붙임참조

2016년 1월 12 일

포 항 시 장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시장)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외국인 포함)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416,968		62,546	10개 읍면동 이상에서 읍면동별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포 항 시	구룡포읍	8,237	1,236	
	연일읍	26,532	3,980	
	오천읍	41,176	4,170	
	대송면	4,065	610	
	동해면	4,301	646	
	장기면	4,450	668	
	호미곶면	2,058	309	
	상대동	24,975	3,747	
	해도동	18,169	2,726	
	송도동	13,686	2,053	
	청림동	5,371	806	
	제철동	2,843	427	
	효곡동	24,089	3,614	
	대이동	16,590	2,489	
	흥해읍	27,847	4,170	
	신광면	2,840	426	
	청하면	4,853	728	
	송라면	2,059	309	
	기계면	4,943	742	
	죽장면	2,747	413	
	기북면	1,238	209	
	중앙동	15,408	2,312	
	양학동	15,444	2,317	
	죽도동	19,319	2,898	
	용흥동	20,669	3,101	
	우창동	22,563	3,385	
	두호동	19,747	2,963	
	장량동	52,097	4,170	
환여동	8,652	1,298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시의원)

지역선거구	읍면동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외국인 포함)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 기준	20/100 산정수	
합계		416,968			
가 선거구	흥해읍	27,847		5,570	
나 선거구	계	18,680		3,736	2개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신광면	2,840	187		
	청하면	4,853	187		
	송라면	2,059	187		
	기계면	4,943	187		
	죽장면	2,747	187		
	기북면	1,238	187		
다 선거구	계	58,676		11,736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양학동	15,444	545		
	용흥동	20,669	545		
	우창동	22,563	545		
라 선거구	계	54,474		10,895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중앙동	15,408	545		
	죽도동	19,319	545		
	두호동	19,747	545		
마 선거구	계	60,749		12,150	
	장량동	52,097	587		
	환여동	8,652	587		
바 선거구	계	21,900		4,380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송도동	13,686	219		
	청림동	5,371	219		
	제철동	2,843	219		
사 선거구	계	43,144		8,629	
	상대동	24,975	432		
	해도동	18,169	432		
아 선거구	계	30,597		6,120	
	연일읍	26,532	306		
	대송면	4,065	306		
자 선거구	오천읍	41,176		8,236	
차 선거구	계	19,046		3,810	2개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구룡포읍	8,237	191		
	동해면	4,301	191		
	장기면	4,450	191		
	호미곶면	2,058	191		
카 선거구	계	40,679		8,136	
	효곡동	24,089	306		
	대이동	16,590	306		

포항시 공고 제2016-22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포항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비 고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인구수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의 체류자격자)	
417,374	416,612	392	370	27,825

2016년 1월 8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고 제2016-→호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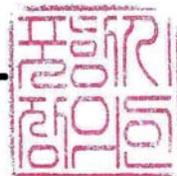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비 고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417,360	416,612	392	356	4,166

2016년 1월 8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의회 공고 제1호

##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포항시의회 의원 이동결 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6년 1월 20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6년 1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